

세이카초(精華町) 홍보 캐릭터 코스튬 등의 사용에 대한 요강

(취지)

제 1 조 이 요강은 세이카초(精華町)가 권리를 보유하는 세이카초 홍보캐릭터 코스튬 등(이하 「코스튬 등」이라고 함.)을 사용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함

(정의)

제 2 조 이 요강에 있어서 다음의 각 호에 언급한 용어의 의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것에 따름.

- (1) 캐릭터 - 그 존재를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명칭을 부여하고 기타 음성, 외견, 성격 등에 따라서 특징 지어진 추상적 개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창작 되어진 일러스트, 회화, 동영상, 입체 공작 등의 입체 저작물을 의미함.
- (2) 세이카초 홍보 캐릭터 코스튬 등 - 초가 저작권을 보유한 별표의 「코스튬」, 「헤드셋」, 「링」 또는 「지팡이」를 의미함.
- (3) 사용자 - 코스튬 등을 사용하여 이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사람을 의미함.
- (4) 이차적 저작물 - 저작권법(쇼와 45년 법률 제 48 호) 제 2 조 제 1 항 제 11 호에 규정하는 이차적 저작물 및 저작물의 복제물, 저작물의 개변 또는 절제에 의해 작성된 저작물을 의미함.

(사용)

제 3 조 누구든 코스튬 등을 사용할 수 있음.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1) 세이카초 또는 제 삼자의 신용, 지적 재산권 그 외 일체의 권리 또는 명예를 침해하는 사용 또는 그러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자신의 상표나 디자인으로 하는 등, 독자적으로 사용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령 위반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특정의 정치, 사상, 종교 등에 사용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흡사 세이카초가 공인한 듯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형태로서의 사용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코스튬 등에 표시되는 초장의 색 또는 모양의 변경, 또는 변경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전 각 항목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정장(町長)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코스튬 등에 관한 저작권, 그 외 일체의 권리는 대가의 지불 유무에 관계없이 초에 귀속됨. 따라서, 사용자가 코스튬 등 및 코스튬 등의 이차적 창작물의 상표 등록, 디자인 등록, 그 외의 어떠한 등록도 금지한다.

(인정)

제 4 조 코스튬 등의 사용자는 신문, 텔레비전 또는 잡지 등 보도관계기관이 보도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초가 실시주체가 되는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이카초의 공인을 얻어 코스튬 등을 사용할 때는 미리 정장(町長)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2 전항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인정 신청서(별기양식 제 1 호)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장(町長)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개요 등, 신청자의 사업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2) 캐릭터 등의 사용 상황을 알 수 있는 완성샘플 등

(3) 그 외 정장(町長)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3 정장(町長)은 전항의 인정 신청서의 제출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인정서(별기양식 제 2 호)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 정장(町長)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코스튬 등의 사용에 대한 조건 또는 제한을 덧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4 전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인정 시에 허락된 사용내용으로만 사용할 것.
- (2) 해당 사용에 따른 물건의 완성품을 제출할 것. 단,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진 등을 제출할 것.
- (3) 인정을 받은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하지 않을 것.
- (4) 코스튬 등을 이용한 상품 등, 선전 또는 광고에는 인정 시의 허락번호 (「©精華町2013京町セイカ# (番号)」又は「©Seika town 2013 yomachi.seika# (番号)」) 를 그 상품, 포장, 광고 등에 반드시 명시할 것.

5 사용자가 인정 시의 허락된 사용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시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6 정장(町長)은 다음의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인정을 취소하고 사용자에게 대해 사용물건 등의 회수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 취소일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한다.

- (1) 사용자가 이 요강을 위반한 경우
- (2) 사용자가 제 3 항의 인정에 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음이 판명된 경우
- (4) 제 3 조 제 1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5) 그 외 코스튬 등의 사용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은 사용자가 자신의 상표나 디자인으로

하는 등, 독점하여 로고 등을 사용하는 권리를 부여하여 상품, 사용자 등에 대해 초의 권장을 실시하는 것은 아님.(사용제한 및 통지)

제 5 조 정장(町長)은 사용자에게 의한 코스튬 등의 사용의 형태나 상황이 제 3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스튬 등의 사용에 관한 조건 또는 제한을 덧붙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신속하게 그 조건 또는 제한에 따라야한다.

2 사용자는 코스튬 등의 사용이 전조 제 1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장(町長)에게 통지해야만 한다.

3 정장(町長)은 필요에 따라 사용자에게 코스튬 등의 사용 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면책)

제 6 조 초는 코스튬 등 및 코스튬 등의 이차적 창작권 사용에 관하여 특정의 사용목적에의 적합성, 제 3자의 권리의 비침해, 하자의 부존재를 포함한 모든 보증을 하지 않는다.

2 초는 코스튬 등은 코스튬 등의 이차적 창작물의 사용 및 전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조건 또는 제한에 의해 발행하는 사용자의 어떤 손실에 대해서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3 초는 제 4 조에 기초한 코스튬 등의 사용의 인정 또는 취소에 기인하는 손실 보상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않음.

4 사용자는 코스튬 등을 사용한 상품 등의 하자에 의해 제 3자에 손실을 준 경우는 모든 책임을 지고 초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5 초는 이 요강에 기초하여 코스튬 등의 사용 또는 인정에 필요한 비용 및 역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 7 조 (준거법)

1 이 요강은 일본법에 준거하여 일본법에 의해 해석되는 것으로 한다.

2

이 요강의 어느 규정이 준거법의 강행법규에 저촉되는 경우,

해당 규정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해당 규정은 강행규칙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규정에 가장 가까운 내용으로 수정되는 것으로 한다.

제 8 조 (관할)

이 요강에 관한 일체의 분쟁은 일본의 교토지방법재판소를 제 1 심 전속적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한다.

제 9 조 (기타)

1

이 요강은 일본어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이 요강의 각 조항의 타 언어에의 번역은 참조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 요강의 번역판과의 사이에 어긋남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어 규정을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요강의 코스튬 등의 사용에 대하여 기술이 없는 모든 권리는 세이카초가 유보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 (위임)

이 요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장(町長)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요강은 헤이세이(平成) 25년 9월 2일부터 실시한다.